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38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6. 10. 31.
4. 회부일자 : 2016. 11. 03.

II. 제안이유

- 현행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가운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 신뢰성 등을 높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입법기술상 효율적인 방식인 일괄정비 형식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안 제1조 외)
- 「정부조직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및 본청 부서명칭 변경(안 제1조 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외).
-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안 제5조 외).
- 「지방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 외).
-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일부학교의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24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 [별첨1] 참고.

3. 기 타 :

- 입법예고(2016. 10. 14. ~ 10. 24.) : 의안 [별첨2] 참고.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38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0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다수의 교육청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주요 정비사항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총 34개 조문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등 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34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기술상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를 비롯하여 제3조, 제4조, 제5조 등 19개 조문은 ‘지역교육청’ 또는 ‘하급교육청’ 등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는 것이고,¹⁾
안 제3조, 제14조, 제17조, 제31조 등은 「정부조직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예산회계법」,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 외 동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는바,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법적 통일성 및 체계적합성 확보의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역교육청’이라는 용어는 2013년 12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3.] [법률 제14372호, 2016.12.13., 일부개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